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18

발의연월일: 2024. 8. 21.

발 의 자: 한정애·박홍배·박지원

송옥주 · 이수진 · 김재원

이용우 • 김주영 • 민홍철

정진욱 · 김영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위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여권의 사용제한 규정을 두면서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의 목적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한에도 불구하고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해외구호 활동은 별도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인도적 구호 활동을 위한 출국 또한 제한되고 있어 특히 비정부단체(NGO)의 분쟁 지역에서의 구호 활동 자체가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여권의 사용 등의 예외적 허가 사유로 해외구호 활동을 포함함으로써 인도주의에 입각한 해외구호 활동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법률 제 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중 "공무"를 "공무, 해외구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①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①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	
·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	
(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	
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	
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	
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	
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	
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u>공</u>	<u>3</u>
<u>무</u>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	<u>무, 해외구호</u>
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